

과업지시서

1. 공사개요

- 가. 공 사 명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간호대학 실습실 환경개선공사(건축)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공사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길 15(만촌동) 수성대학교 켄마관 3층
라. 공사규모

공사명	켄마관	공사범위	공사내용	비고
간호대학 실습실 환경개선공사	3층	3층 지정범위 - 정신,지역간호,디브리핑룸 약130m ² - 시뮬레이션실 및 실습실 약575m ² - 3층 공용부 로비 지정부위	환경개선공사	

마. 계약 및 착공 관련 사항

- 계약의 체결: 낙찰 후 3일 이내 / 공사의 착공: 계약 후 5일 이내

2. 공사범위 및 개요

- 켄마관 3층 간호대학 실습실,강의실 공간구축 공사 일체
- 켄마관 3층 공용부 로비 인테리어 금속기둥 부분철거
- 도면,시방서,과업지시서,현장설명서 내용 중 한 곳에 명시된 모든 부분 포함
- 공사범위 및 3층 공용부 전체 준공청소 포함(작업부산물 및 비산 발생시 계단실까지 포함)

3. 공사 일반사항

- 가. 본 공사는 건축, 기계설비등 공사 등을 포함한다.
- 나.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총액 견적제출이며, 계약내역서의 물량/내용과 설계도면상의 물량/내용이 상이할 경우 설계도면대로 시공한다.
- 다. 각종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내역을 산출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과업지시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등 어느 한쪽만 표기되어 있어도 본 공사에 포함한다.
- 라. 공사에 필요한 임시전력 및 용수는 시공사 부담으로 설치하고, 경비(사용료 포함)는 시공사가 부담한다.
- 마.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대내·외 민원의 대처 및 해결은 시공사 부담으로 이행한다.
- 바. 공사 전 현장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시설물이 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철거 및 이전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승인받아 시공사 부담으로 해체, 이설한다.
- 사. 경미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정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 아. 발주처에서 작성된 설계내역서의 단가(물량 변동 없음)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작성되어진 내역서를 계약내역서로 한다.

자. 본 공사는 과업지시서,시방서,도면에 의거한 공사로서 내역서의 품명 누락분, 도면 물량과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차. 자재의 승인

- 1) 시공자는 각 공정별 시공 전 발주처로부터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는 시공자가 제시한 자재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 2) 자재가 현장에 반입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반입 시 확인 및 검사를 받고 반입된 자재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 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표시품이 없는 경우 최상품의 신품을 사용하고 난연 및 불연재 제품을 사용한다.
-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실내재료마감표를 참조하여 방화성능에 지장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카. 공사의 진행

- 1) 공사진행을 위한 가설물 설치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시공자는 착공계 제출 시 공정계획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착공 후에는 공사 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공사 진행 중 발견되는 장애물, 매설물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이설하여 공사를 완료하며 원위치로 발주처와 협의된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4) 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마감과 기술적 상식상 품질의 확보를 위해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공사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5) 발주처는 공사 진행상 필요하거나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시공사중단을 시킬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6)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다르거나 누락된 때, 관련 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7) 공사로 인한 기존 건물의 손상등의 파손,기타 훼손이 발행할 때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8) 폐기물의 처리
 - 모든 폐기물 및 철거물 발생시 즉시 교외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 철거 공사 및 기타 공정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시공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폐기물은 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되어야 하며 이의 처리가 적절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후정산보험료

가. 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은 조달청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나.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등 사후정산 보험료는 증빙서류 제출 금액으로 정산하며, 증빙서류에는 단위현장명으로 사업장이 지정되어야 한다. 해당보험료는 현장설명시 금액을 안내하며 이 금액은 원가계산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 가.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사고(화재,도난,부상,기타 사고등)은 시공자가 책임, 처리한다.
- 나. 공사 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시공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하여야 한다. 반드시 현장주변으로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공사구역에 대한 통행을 제한 하여야 한다.
- 라.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현장청소 및 발생한 폐기물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마. 계약 상대방은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다(붙임1 참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 기타유의사항

- 가. 시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별도 발주 공사와 건축공사가 접하는 부분은 시공사가 1차적인 마감 관리의 책임을 진다.(별도발주공사: 전기,통신,냉.난방기 공사등)
- 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을 만족하도록 전문공사가 발생되는 부분은 관련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공사하도록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도급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 계약 시 공사포기각서(본 대학 소정 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6. 07.

수 성 대 학 교 총 장 [직인생략]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